

의안번호	2201759
의 퇴 인	정희용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8.
추 계 번호	24D1973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1억 2,000만원, 2030년 113억 9,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81억 1,400만원(연평균 76억 2,3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(안 제6조의3)	3,120	5,764	7,986	9,847	11,397	38,114	7,62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3(생계지원금)	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3(생계지원금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(안 제6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자의 확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(현황) 국가보훈부의 ‘생활조정수당’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‘생계지원금’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80세 이상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 본인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)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19억 5,800만원(9,965명 대상)의 예산 편성
 - (대상자) 참전유공자 1세별 현황 자료(2023년 12월말 기준 123,364명)에 통계청 남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추정한 후 여기에 유배우자율

83.7%(80~84세) 및 배우자 사망률 7.6%을 적용하고, 참전유공자 저소득층 비율 33.1%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를 곱하여 개정안에 따른 생계지원금 대상자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
- 80~84세¹⁾ 남성가구주의 유배우자율은 통계청의 가구주의 연령별 혼인상태 통계²⁾를 적용
- 배우자 사망률은 7.6%는 통계청의 장래생명표의 75~79세³⁾에 해당하는 여성 사망확률 적용⁴⁾
- 참전유공자 저소득층 비율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33.1%는 국가보훈부에서 3년마다 수행하는 『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』 366쪽 참조

1)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81세(2023년 12월 기준)로 나타남

2) 통계청, 가구주의 성별/연령별/혼인상태별 가구

(단위: 가구)

가구주의 연령별	2020					유배우자율 (B/A)
	일반가구(A)	미혼	배우자있음(B)	사별	이혼	
합계	14,081,262	2,480,993	10,398,713	323,770	877,786	73.8%
15세미만	259	259	-	-	-	-
15 ~ 19세	36,262	36,185	77	-	-	0.2%
20 ~ 24세	257,522	250,987	6,188	17	330	2.4%
25 ~ 29세	623,225	515,072	105,181	128	2,844	16.9%
30 ~ 34세	891,299	447,548	434,231	458	9,062	48.7%
35 ~ 39세	1,279,574	338,406	911,227	1,434	28,507	71.2%
40 ~ 44세	1,412,763	261,642	1,089,955	3,241	57,925	77.2%
45 ~ 49세	1,655,741	245,100	1,289,581	7,931	113,129	77.9%
50 ~ 54세	1,736,711	175,733	1,380,461	16,885	163,632	79.5%
55 ~ 59세	1,712,986	109,082	1,398,938	27,886	177,080	81.7%
60 ~ 64세	1,569,180	60,773	1,311,506	41,226	155,675	83.6%
65 ~ 69세	1,074,468	24,535	912,742	43,502	93,689	84.9%
70 ~ 74세	785,502	9,601	679,616	48,552	47,733	86.5%
75 ~ 79세	562,953	4,326	487,360	50,918	20,349	86.6%
80 ~ 84세	329,524	1,219	275,843	46,115	6,347	83.7%
85세이상	153,293	525	115,807	35,477	1,484	75.5%

자료: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

3)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81세, 배우자의 연령은 3~4세 연하로 가정하여(통계청의 ‘평균 혼인 및 이혼 연령 추이’에 따르면, 1981년 기준 혼인연령 차이는 3.4세로 나타나고, 참전유공자의 혼인은 1981년 이전으로 예상됨) 77~78세로 추정함

4) 통계청 장래생명표(5년 단위, 5세 단위)에서 2025년 연령대별 여성 사망확률: 70~74세 3.6%, **75~79세 7.6%**, 80~84세 16.6%, 85~89세 32.1%, 90~94세 52.5%, 95~99세 72.8%

[표 2] 생계지원금 대상자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참전유공자 중 사망자(A)	9,384	8,670	8,006	7,434	6,927
유배우자율(B)	83.7%	83.7%	83.7%	83.7%	83.7%
배우자수(C=A×B)	7,855	7,257	6,702	6,223	5,799
배우자 사망률(D)	7.6%	7.6%	7.6%	7.6%	7.6%
누적배우자(E=C _{t-1} ×(1-사망률)+C _t)	7,855	14,512	20,105	24,791	28,694
저소득층비율(F)	33.10%	33.10%	33.10%	33.10%	33.10%
저소득층 배우자수(E×F)	2,600	4,804	6,655	8,206	9,49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지원단가)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므로, 추계기간 동안 10만원으로 가정
- (추가재정소요) 위에서 산출된 대상자 수에 생계지원금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는 향후 5년간 387억 5,300만원으로 추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누적배우자(A, 명)	2,600	4,804	6,655	8,206	9,498	
생계지원금(B, 만원)	10	10	10	10	10	
소요비용(A×B×12, 백만원)	3,120	5,764	7,986	9,847	11,397	38,114

주: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